

한두환 수의사 변호사의 법률칼럼 - 수의사의 생활법률 (14)

유사한 이름의 동물병원에 대한 조치



한 두 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today-we@hanmail.net

김명의 수의사의 [명의동물병원]은 진료를 잘하는 곳으로 명성을 얻고 있고 TV에도 출연하는 등 성황리에 영업 중이었다. [명의동물병원]은 반려동물 보호자 사이에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그래서 김명의 수의사는 [명의동물병원]의 상표(서비스표) 등록도 모두 마쳤다.

이러한 [명의동물병원]의 유명세에 기대고자 이모용 수의사는 강남에 동물병원을 개원하면서 병원 이름을 [강남명의동물병원]으로 하였고, 병원 간판의 디자인도 [명의동물병원]의 간판 디자인과 유사하게 제작하였다. [강남명의동물병원] 인근의 보호자들은 [강남명의동물병원]이 김명의 수의사의 [명의동물병원]의 강남지점으로 오해하고,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모용 수의사는 오진을 하기도 하고 수술 중 반려동물이 죽기도 하면서, 보호자들과 마찰이 자주 발생하곤 하였다. 김명의 수의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모용 수의사와 다투는 보호자들 중 일부가 김명의 수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명의 수의사에게 보호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을까? 또 김명의 수의사는 이모용 수의사를 상대로 어떠한 조치가 가능할까?

만일 김명의 수의사가 이모용 수의사에게 [명의동물병원]의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면 김명의 수의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보호자들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하지만 이모용 수의사는 [명의동물병원]의 이름을 모용한 것이기에 당연히 김명의 수의사는 보호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

반면 김명의 수의사 역시 이모용 수의사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경우 김명의 수의사가 이모용 수의사를 상대로 법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이모용 수의사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형사상 조치와 이모용 수의사에게 특정 행위를 하게 하는 민사상 조치에 대해

여 알아보자.

1. 상표권 침해 여부

우선, 김명의 수의사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이모용 수의사가 [명의동물병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어야 하므로, 상표권 침해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 김명의 수의사는 특허청에 [명의동물병원]을 상표등록함으로써 상표권을 얻게 되며,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6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행위로 보고 있다. 이모용 수의사는 [명의동물병원]과 유사한 [강남명의동물병원]이라는 상표를 동일한 업종인 동물병원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러므로 김명의 수의사는 상표권자로서 상표법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강남명의동물병원]과 [명의동물병원]은 이름도 유사하고, 간판 디자인도 유사하게 제작하였으므로 유사한 상표인 것이 명백하지만, 양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 여부가 애매한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되, 양 상표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다르게 양 상표를 보았을 때를 기준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상표의 유사성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다. 양 상표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경우는 상표의 작은 차이도 확연히 구분이 가능하지만, 일반 수요자가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양 상표를 보는 경우는 작은 차이는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민사상 조치

가.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

상표법 제65조 제1항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를 금지한다는 것은 김명의 수의사는 타인이 [명의동물병원]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즉, 이모용 수의사는 [강남명의동물병원]이라는 간판을 사용할 수 없다.

나.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위의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를 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소송으로 [강남명의동물병원]의 간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 소송이 끝나고 나서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강남명의동물병원]의 간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가처분 신청은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이보다 훨씬 빠르게 판결이 나고, 가처분 판결 즉시 이모용 수의사는 [강남명의동물병원]의 간판을 사용할 수 없다.

다. 손해배상청구

상표법 제66조의2는 특별히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이 손해배상청구를 특별히 규정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보다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가 보다 용이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상표법은 제68조에서 상표권을 침해한 자의 고의를 추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에서는 피해자인 청구인이 가해자가 고의로 가해행위를 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상표법에서는 상표권 침해자의 고의를 추정하여서 상표권자가 굳이 고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상표법 제67조 제2항은 상표권을 침해한 자가 얻은 이익을 상표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역시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에서는 피해자가 자기가 입은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자의 손해액을 침해자의 이익액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상표권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침해자의 이익액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신용회복청구

상표법 제69조는 상표권침해자가 상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모용 수의사는 의료과실 등으로 김명의 수의사의 [명의동물병원]의 신용을 실추시켰다. 이런 경우 법원은 이모용 수의사로 하여금 [명의동물병원]의 신용을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모용 수의사로 하여금 [강남명의동물병원]은 [명의동물병원]과 무관한 병원임을 지면신문 등에 공고·홍보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한 조치라 하겠다.

3. 형사상 조치

가. 상표권침해죄

상표법 제93조는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모용 수의사는 김명의 수의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러므로 김명의 수의사는 이모용 수의사를 상표법 위반으로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다.

4.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김명의 수의사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다.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여야 가능하다.

김명의 수의사가 [명의동물병원]을 상표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도 [명의동물병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 이런 경우는 '상호'라고 하여 상표법이 아닌 상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법에도 제23조에서 타인이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이 상표법이 아니라 상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법적으로 상호를 보호받기가 다소 까다로워질 수 있다. 즉, 타인이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였다라도, 타인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부정한 목적, 타인이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자신의 손해액, 타인의 유사 상호 사용과 자신의 손해액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